

結合財務諸表 導入背景 및 效果에 관한 研究

김 상 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Sang-Kyu Kim*

요 약

1997년말 이후 韓國經濟는 IMF의 流動性調節資金을 支授받게 되었다. 支授을 받으면서 企業에 대한 經營의 透明性提高方案으로 企業集團에 結合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連結財務諸表를 制定하여 여러차례 修正을 거쳐 支配·從屬關係에 있는 企業에 대해서는 連結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構造의 特性으로 인하여 連結財務諸表의 作成과정에서 制度上의 문제와 運用上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現在의 連結財務諸表의 現況과 問題點을 把握하고 이번에 企業에 따라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게될 企業集團 結合財務諸表의 內容을 통하여 比較를 한다음 結合財務諸表의 導入背景과 그 效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Korean economy has been under the IMF-led rescue programs since the late 1997. For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currency, Korean government had made the Korean firms which are depend on each other financially compos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ince 1985, because South Korea's financial crisis has been caused by a string of corporate failures that have put enormous strain on the banking system at a time when the won was plunging against the dollar.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get the transparency in the actions and accountability of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because of the domestic corporation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law of accounting. This paper reviewed, therefore, some problems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vantages to introducing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comparing the contents of those statements

* 경원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부교수

논문접수 : 98. 6.19 심사완료 : 98.8.13

I. 서론

1997년 7월 이후 동남아 외환시장의 불안정 상태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경영에 애로를 맞으면서 급격한 외환수급의 불안으로 야기된 국내 보유 외화자금 부족으로 우리 나라는 1997년 11월 IMF의 단기외화차입금상환 조절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자금지원조건으로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의 투자자들도 재무제표만으로 기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해줄 것을 동시에 바라고 있고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국제화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회계기준의 선진화 국제화를 맞으면서 국제 회계기준 수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1]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의 충분한 설정, 지주회사 설립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사실상 기업회계기준만을 놓고 보면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점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IMF로부터 불신을 받게된 것도 기업회계 기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유가증권 평가손이나 대손 처리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었다. 많은 거래 사실에 있어서 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었다.

기업들도 이제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회계감사를 억지로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

1)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 조달을 원할 히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되었다)

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투자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를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기업회계의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인다. 미국은 여러 회사들이 홀딩컴퍼니(지주회사)로 묶여있고, 일본은 금융기관을 통한 상호지분보유로 연결돼있다. 한국은 재벌이라는 개인의 지배구조로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를 주도해가고 있는데 그룹기업에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결합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연결재무제표의 현황과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와의 비교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살펴본 다음 IMF에서 요구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II. 연결재무제표의 의의와 현황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는 지배회사의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한 회사의 경영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의 경제실체(economic entity)인 것처럼 그룹내 회사들의 각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재 작성한재무제표이다.[3] 또한 연결재무제표는 복수의 개별회사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는 하나의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하여 복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합하는 것이다.[4]

지난 1985년 연결재무제표를 제정하였으나 1987년 4월 27일 제1차 개정과, 1992년 6월 27일에 제2차 개정, 그리고 1994년 6월 10일에 3차 연결재무제표기준 개정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의 회계단위로서 경제적인 단일체로 보고 그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10]

2.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1994년 4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대상을[5]

- ① 주식회사(지배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종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외감법령 12조 3의 ①항1호).

사가 다른 주식회사(종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인 경우로 회사 대 회사간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업집단에서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고 연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수가 많이 있게 된다

우리 나라 1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6]

기업집단명	공정거래상 계열회사수	여신관리규정상 계열회사수	지배회사	종속회사	연결제외법인 (전체대비비율)
현 대	57	57 + 97	10	20	27 (47%)
삼 성	80	80 + 189	16	25	39 (49%)
L G	49	49 + 96	9	18	22 (45%)
대 우	30	30 + 219	6	12	12 (40%)
선 경	46	46 + 41	6	19	21 (46%)
쌍 용	25	25 + 49	4	10	11 (44%)
한 진	24	24 + 12	5	4	15 (63%)
기 아	28	28 + 12	2	5	16 (57%)
한 화	31	31 + 21	5	20	19 (61%)
롯데	30	30 + 4	3	23	20 (67%)
합 계	400	400 + 740	66	156	202 (51%)

- ② 주식회사(지배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종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경우(외감법령 제12조 3의 ①항2호).

- ③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 포함),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결범위는 완전한 지분율기준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실질지배력 기준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외감법령 제1조의 3의 ①항3호).

3. 연결재무제표제도의 현황

현행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는 주식회사(지배회

Ⅲ.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와의 비교

1997년 3월 31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에서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외부감사를 받은 결합재무제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30대 계열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에도 합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거래은행에 제출하도록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제33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추후 작성하게 될 재무제표와는

다른 점은 계열기업군의 재무제표를 수평적으로 단순히 합산 만하고, 계열기업간에 내부거래는 서로 상계 되지 않은 상태로 주거래은행에 제출하는 것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6].

IV. 연결재무제표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1) 연결기준과 기업의 소유구조의 괴리[5]

- ① 현행 연결 기준은 지배·종속관계를 회사간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실제 우리기업의 소유구조는 실질소유 경영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서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 ② 따라서 회사간 지분율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실질소유 경영자의 지

배를 받는 다수의 지배회사가 존재하게 되고, 연결에서 제외되는 회사도 다수 생길 것이다.

2) 우리 나라의 경영소유 구조로 볼 때 기업집단이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이에 대한

- ①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②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의 연결재무제표에 상응하는 정보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 ③ 현재도 재벌그룹의 경우, 매년 별도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그룹에 대한 홍보, 사채발행 등 해외자본조달 목적), 국내의 이해관계자 들에게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2. 운용상의 문제점

- 1) 작성자 측면에서 작성유인이 적다[5].
- ① 대출시 재무제표상의 건전성보다는 담보제공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항 목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연결 기준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발생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거나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종속회사의 최대 주주인 경우	● 동일인(친인척등 특수 관계인 포함)이 발생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 소유하는 최대 주주이거나 - 임원의 임면등으로 사실상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회사(계열 회사)들의 집단
지배의 주체	법인 소유 지분회사	개인 및 회사
작성의 주체	지배회사	● 결합재무제표 작성 회사 (기업 집단이 선정한 대표회사)
작성대상집단	● 종속회사를 포함한 지배회사 - 해외종속회사 포함 - 금융업, 소규모 주식회사는 제외	● 대규모기업집단 - 해외 계열회사 포함 - 금융업, 소규모, 비주식회사 포함
주요 이용자	지배회사의 주주(이해관계자)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 감독 기관, 정부 (기업 집단의 모든 이해 관계자)
제공정보	종속회사의 영업 실적이 반영된 지배 회사의 배당 가능성 등	계열회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반영하여 당해 기업집단의 위험도 평가
성 격	지분율 기준에 의함	실질적인 경영지배력 기준에 의함
작성이론	지배 회사 이론 중심	기업실체

- 여부가 중요하다
- ②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요구가 현재 정부외에는 크게 없는 실정이다.
- 2) 활용자 측면에서 재무정보로서의 가치가 낮다
- ① 금융기관이 여신공여시에 계열기업내 여타 관련 기업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신심사가 곤란하다
- ② 투자자등 이해관계자의 기업가치 평가 및 부도·파산여부 판단에 연결재무제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③ 지배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타계열회사를 통한 이익조작이 가능하므로 정보를 누락시킬 수 있다

V. 結合재무제표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1. 結合재무제표의 개념

기업집단 結合재무제표(또는 단순히 '結合재무제표'라 함)는 둘 이상의 기업이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경우에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이해관계자 들에게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수평적으로 結合한 재무제표를 말한다[6]. (외감법1의 2).結合재무제표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집단 중심의 특수한 경제상황하에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재무제표 제도이다.

結合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동일 소유주나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통 소유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단일체인 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히 수평적으로 結合한 것으로서 채권·채무와 내부손익 거래를 상계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결 재무제표와 다른점은

- (1) 지배회사 지분과 외부주주지분을 구분하지 않는 점과

- (2) 실질지배력을 포함범위의 기준으로 채택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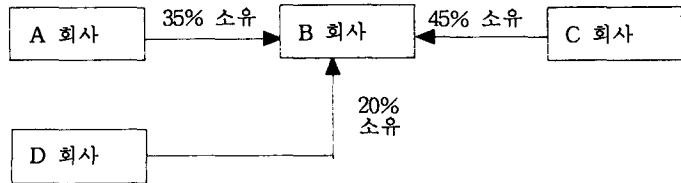
2. 結合재무제표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상의 연결범위와 기업구조의 현실과리

현행 연결기준은 지배·종속관계를 회사대 회사간 지분을 50%초과 또는 30%이상 소유시 최대주주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실질소유경영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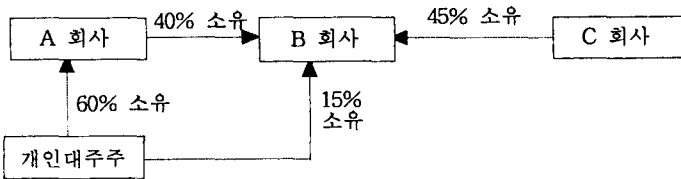
따라서 기업집단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며, 최근 금융개혁 위원회의 주장 및 IMF시대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명성 강화의 차원에서 기업집단 結合재무제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법인의 지배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7].

-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대 주주가 지배



이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이 없으며, C회사는 30%초과지분 소유회사이지만 최대주주가 아니므로(즉, 최대주주는 개인 대주주임) A회사와 C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다.

- ② 동일계열 기업 군에 의한 지배(A회사와 D회사가 동일 계열 기업군)



C회사는 최대주주이나 사실상 지배력이 없으며, A회사와 D회사는 각각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다

따라서 회사간 지분을 기준에 의할 경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실질 소유경영자의 지배를 받는 다수의 지배회사가 존재하게 되고 연결해서 제외되는 계열회사도 다수 있다('97년 말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57.5%에 달함)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소유구조로 볼 때 기업집단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이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한 그룹 내에 수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97년말 현재 : 삼성 16개, 현대 10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30대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일종인 기업집단 재무제표의 작성 및 외부감사를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해당 기업집단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AICPA는 1959년에 발행한 ARB(회계연구공보)No.51에서 한 개인이 여러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들 회사의 영업이 서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대신에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 또한 결합재무제표는 관련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연결제의 기업집단이나 공동지배기업 집단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RBNo.51 Paragraph)[5].

2)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 및 비정상 자금거래의 제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 의해 부풀린 외형·이익이 상계되어 경영성능이 진실하게 공시되고, 기업집단 전체의 차입금현황등 재무상태가 객관적으로 파악되어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서 정부·금융기관·투자자등 이해관계자는 기업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확보하게 되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부실경영을 사전에 억제하여 건전한 경제구조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업집단내의 기업간의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등으로 말미암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계열기업간의 어음교환, 할인 및 계열기업간의 상호보증 등으로 보증채무 이행능력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유구조의 인위적 조작을 통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받던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

3) 소수 주주(소액 투자자)의 보호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의 과도한 차입거래와 지급보증으로 인한 연쇄부도 발생으로 소수주주가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공시 및 외부감사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투자판단 재무자료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결합재무제표의 정착을 통해 기업집단내 분식 결산이나 비정상적인 내부거래가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합재무제표의 기대효과

금세기를 전후로 미국에서 처음 나타난 연결재무제표는 1930년대에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회계실무가 되었고, 유럽대륙에서는 세계대전 이후 일대혁신을 맞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규정이 1977년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재무회계 기준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집단에 대하여 회계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8].

- ① 기업경영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반면에 사전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획득의 불균형과 해외 현지법인의 통제가 가능하며,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판단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의 기업소유 구조에 적합하므로 기업집단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 투자자등 이해관계자가 기업가치 및 부도·파산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보조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 ③ 결합기준을 여신관리 규정이나 공정거래법에 연결할 경우 여신관리나 공정거래 정책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집행의 기초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다.

VI. 결 론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기업회계의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인다.

미국은 여러 회사들이 홀딩컴퍼니(지주회사)로 묶여있고 일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상호지분보유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재벌이라는 개인의 지배구조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에 종속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든지 또는 지배와 종속이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동시에 최대 주주인 기업에만 적용되어 왔다. 또 그룹의 매출이나 자본금 순이익 등이 왜곡되어 왔다.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우리 나라에만 시행하려는 새로운 회계제도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합재무제표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뜻이 있다면 이것은 배려위주의 기업경영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도입으로 인한 기업집단의 신용도와 국제경쟁력

약화가능성,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의 불투명함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출자총액,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의 제한·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기업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여기에 맞는 새로운 공시제도가 필수적인가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만 금지되어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 결과 개인에 의한 기업 지배구조만을 강화시켰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고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업지배방식이 됐다.

지주회사설립이 허용되고 연결재무제표가 광범위한 기업 군을 대상으로 도입될 때까지 결합재무제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References

- [1] 金相圭, 新會計原理, 弘益出版社, 1997.
- [2]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12條 1項.
- [3]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2條 2項
- [4] 宋자外, 國際會計, 法經出版社, 1989.
- [5] 張志仁外 共譯, 國際會計, 法文社, 1994.
- [6] 租稅通覽社, 稅務經營, 1998. 통권 478호.
- [7] 韓國公認會計士會, 會計便覽, 1996.
- [8] 韓國標準協會, 結合財務諸表의 작성/分析實務特別 세미나, 1998.
- [9] Arun K. Deva, partner, Touche Ross & CO. A profile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Tempo, New York, 1981.
- [10]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no.3 (London: IASC, 1996).
- [11] Touch Ross & co., "ARB51-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pen Line, A Letter to Accounting Educators, Febuary, 1979.

● 저자소개

김 상 규

1966년 : 부산수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1984년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1996년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회계학 전공)

1991년 ~ 현재 : 경원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부교수

※ 관심분야 : 회계정보 시스템, 무역정보 시스템 등